

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농어업작업
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 월 11 일

여 수 시 장 2024.5.11



여수시 조례 제2090호

붙임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

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작업”이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업인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.
3. “농어업법인”이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.
4. “농어업근로자”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농어업작업 안전재해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(이하 “안전재해”라 한다)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어업인
2. 농어업법인
3. 농어업근로자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6조(예방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
2.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
3. 안전재해 예방 교육·훈련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예방 지원 사업)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예방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보급·지도
2.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에 필요한 사업
3.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
4.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예방 교육)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·안전보건관리·작업환경개선·농어업기계안전·개인보호장비·편이장비·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